

붙임1
취약계층 범주 안내(사회적배려 어린이)

구 분	비 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보훈자의 자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자치단체장 및 학교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적 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 위 내용에 해당할 경우 개별 면담 시 해당 증빙서류 지참